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나811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나8116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가단120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권정호, 하인준

2. 대한민국

변론 종결2020. 4. 7.

판결 선고2020. 5. 12.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가단1207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원고에게, 피고 경기도는 170,78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취득세 신고를 받을 당시 담당공무원이 진정한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더라면 위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았는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등기로서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우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바, 취득세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신고 내용에 대하여만 심사하면 되는 것이지 매도인의 진위 혹은 매매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위조된 사실을 과세관청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부동산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근거하여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C의 취득세 신고에는 일단 과세요건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5조1),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2) 에서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C이 취득세 신고행위에 대한 경정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태훈

판사안희경

판사김봉남

1)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2)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